

기부금품 관리규정

제정 2020. 6. 29.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고창군장애인체육회(이하 “장애인체육회”라 한다)로 기부되는 기부금품의 접수절차 및 사용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체육회에 대한 기부를 활성화시키고 접수된 기부금품이 적정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기부금품이라 함은 반대급부 없이 취득하는 금전 또는 물품을 말한다.
2. 일반기부금품이라 함은 기부 조건의 지정이 없는 기부금품을 말한다.
3. 지정기부금품이라 함은 지원대상자 또는 사용용도를 지정한 기부금품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장애인체육회에서 처리하는 기부금품 관리 및 기부금영수증 발급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제4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장애인체육회의 기부금품 관리에 관하여는 관계법령 등 다른 법규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기부금품의 종류) 기부금품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일반기부금품
2. 지정기부금품

제6조(기부금품의 접수 및 보관) ① 가맹경기단체가 기부자로부터 기부 신청을 받아 장애인체육회에 접수를 요구하는 기부금품의 경우는 관련 단체의장이 확인한 후 장애인체육회에 접수한다.

② 지정기부금품의 지정 취지가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및 「공직선거법」이나 장애인체육회의 정관을 위반하는 경우 그 사실을 기부자에게 설명하고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및 「공직선거법」이나 장애인체육회의 규약을 위반하지 아니하게 지정하도록 요구하거나 그 지정을 철회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기부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기부금품을 접수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7조(기부신청) 장애인체육회에 기부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기부금품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기부금품 또는 기부재산의 표시
2. 기부자의 성명(법인명) 및 주소(소재지),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3. 지정기부금품일 경우에는 기부조건

제8조(기부금품 장부비치) 장애인체육회 및 가맹경기단체에 기부하는 지정금품에 대하여 기부금의 수입 및 지출내역을 작성 보관하고, 기부대상과 사용목적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기부물품 관리대장 장부「별지 제2호 서식」를 비치하여 관리한다.

제9조(기부물품 가액 산정) ①금전이 아닌 물품 형태로 접수 받은 경우 당해 기부물품의 가액은 이를 접수한 때의 시가로 기부가액을 산정하며 시가가 장부금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장부금액에 의한다.

②시가는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공신력 있는 물가정보 또는 기부자가 제시하는 매입증빙서류상의 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되, 해당 기부물품의 가격이 없거나 중고물품의 경우에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물품의 최근 거래가액을 조사하여 가액을 산정하고 최근 거래가액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기부자가 제공하는 원가자료에 의한다.

제10조(기부금품의 채납 결정 및 통지) ①장애인체육회 회장(이하 “회장”이라 한다)은 후원협약에 따른 기부금품의 경우 기부 신청일로부터 2주일 이내에 기부금품 채납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즉각 기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회장은 기부금품 채납 여부 결정시 해당 기부금품의 후원 조건이 장애인체육회 규약의 고유목적사업에 합당한지 여부와 이에 관련된 제반사항을 검토하여 기부금품의 채납여부를 결정한다.

제11조(기부금품의 회계처리) 기부금품은 장애인체육회 자체회계의 수입 및 지출로 처리한다.

제12조(기부금품의 사용) 회장은 일반기부금품을 기부 목적과 대상을 지정하여 기부금품을 사용할 수 있다. 단, 관계 법령 및 규약의 고유목적사업, 기부자의 기부취지등 위반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감사의 의견을 고려한 후 지정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3조(지정기부금품에 의한 사업의 조정 지원) ①회장은 지정기부금품에 의한 사업을 지원함에 있어 지원효과를 고려하여 그 금액 또는 사업내용을 조정할 수 있다.

②회장은 지정기부자가 제1항에 의한 금품 또는 사업 내용의 조정을 동의할 경우에 한하여 지정기부금품을 채납한다.

③접수된 지정기부금품 중 해당 사업 종료 후 잔액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기부자의 사전 동의를 거쳐 일반기부금품으로 채납할 수 있다. 단, 지정기부자가 당초 기부 신청시 지정기부금품의 잔액 처리 방법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4조(지정기부금품의 교부신청 및 사업의 수행상황보고 등) 지정기부금품의 교부신청 및 교부, 지정기부 대상사업의 수행상황보고 등은 장애인체육회의 회계규정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부 칙(2020. 06. 2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기부금품 신청서

- 성 명(법인명) :
-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
- 주 소(소재지) :
- 기부내용

순번	품 명	규 격	수 량	단 가	금 액	비고
1						
2						
3						
4						
5						
6						
7						
8						
9						
10						
합 계						

- 기부조건(지정기부일 경우에만 기재함)

위와 같이 기부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고창군장애인체육회장 귀하

